

# LONG TERM CARE COMMUNITY COALITION

Advancing Quality, Dignity & Justice

## 가족 권한 강화에 관한 조언: 가족 협의회의 독립성

**가족 협의회(Family Councils, FC)**는 양로원 또는 보조 생활 시설 거주자의 친구 및 친척으로 구성된 단체로, 사랑하는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가족 협의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가족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생활의 질 및 거주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적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가족 협의회가 거주자를 성공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는 **정보 비공개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방법(CFR 483.10(f)(5))에 따라 양로원 가족 협의회는 시설 직원과 **독립적으로** 거주자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이와 동시에 협의회에 비공개 회의 공간을 제공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가족 협의회의 정보 비공개 및 독립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정보 비공개/독립성 보장을 위해 해야 할 일 및 해서는 안 될 일

#### 해야 할 일...

- 가족 협의회 내에서 명확한 정보 비공개 및 의사소통 규칙 확립
-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Zoom 회의실 등 안전한 가상 회의 방식 이용
- 시설 직원과의 연락을 위한 연락 담당자 배정
- 필요한 경우, 시설에 회의 설정 지원 요청. 자율성을 반드시 보장하세요!
- 고충 처리 담당자 활용! 이들은 협의회 회원 교육, 협의회와 시설 간 갈등 조정, 협의회의 독립성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서는 안 될 일...

- 회의 링크 또는 기밀 문제를 공개적 방식이나 오픈 이메일 체인을 통해 공유
- 시설 직원이 허락 없이 회의 및/또는 직접적 논의에 참석하도록 허가
- 회의록 또는 참가자 이름을 직원과 공유(직원이 친절하게 요청한 경우라도 공유해서는 안 됨)
- 사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
- 가족 협의회의 동의 없이 회의 녹음 및/또는 녹음 파일을 직원과 공유

**예시:** 양로원 직원은 가족 협의회의 Zoom 회의 설정을 도운 후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의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협의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 직원의 참석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협의회 연락 담당자는 직원에게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483.10(f)(5)에 따라 협의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권리가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Zoom 회의실 설정에 도움을 준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가족 협의회를 위해 비공개 보안 Zoom 회의실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bit.ly/fam-council-room](https://bit.ly/fam-council-room) 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협의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nursinghome411.org/families](https://nursinghome411.org/families) 를 방문하거나 [families@ltccc.org](mailto:families@ltccc.org) 로 연락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